

행 정 안 전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6. 7. .

행 정 안 전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5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정원 1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정원 2명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과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5명, 7급 7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4명)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중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6명”을 “8명”으로, “5급 2명”을 “5급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5명(5급)”을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으로 한다.

별표 1 중 광주과학수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 자치도(무주군 제외)
-----------	----------------------------------	--------------------------------

별표 2 중 총계 “1,703”을 “1,708”로 하고, 일반직 계 “1,673”을 “1,678”로 하며, 행정사무관 “115”를 “116”으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7”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8”을 “211”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703”을 “1,708”로 하고, 일반직 계 “1,673”을 “1,678”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19”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6”을 “54”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14”를 “1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4”를 “5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을 “69”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을 “12”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7”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8”을 “211”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를 “1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0”으로 한다.

별표 4의2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0”을 “9”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 다음에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1” 및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을 각각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관리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을 “6”으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1”로, 행정주사보 “8”을 “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전산주사보 “13”을 “14”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4(중전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6”을 “1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1” 및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을 각각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관리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를 신설한다.

별표 8의4 전산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을 “2”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6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3월 31일”을 각각 “2029년 3월 31일”로, “2027년 4

월 1일”을 각각 “2029년 4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공업서기 1명)”으로,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2027년 4월 1일”을 “2029년 4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2027년 4월 1일”을 “2029년 4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으로,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2027년 4월 1일”을 “2029년 4월 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을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2027년 4월 1일”을 “2029년 4월 1일”로,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을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2027년 4월 1일”을 “2029년 4월 1일”로,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6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7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u>6명</u>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u>5급 2명</u> ,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 ----- ----- ----- ----- ----- ----- <u>8명</u> ----- ----- <u>5급 4명</u>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	⑦ ----- ----- ---. ----- ----- ----- ----- ----- ----- -----

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
(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
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
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 ⑪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
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
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
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

--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
급 -----

-----.

⑧ ~ ⑪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
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
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9
년 3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429호 행정안전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
56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2029년 3월 31일-----
----- 2029년 4월 1일 -----

-----.

② -----

----- 2029년 3월 31일 -----
----- 2029년 4월 1일 -----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

- ③ -----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공업서기 1명)-----
----- 2029년 3월 31일 ----- 2029년 4월 1일 -----

-----.

- ④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1명, -----
----- 2029년 3월 31일 ----- 2029년 4월 1일 -----

-----.

- ⑤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
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
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2
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
기 1명)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
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2의 정원 8명(서기관 · 과학기술
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8명(행
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또는 사서주사보 1명)-----

----- 2

029년 3월 31일-----

2029년 4월 1일 -----

-----.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서기관 · 과학기술

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

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서기

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

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
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
표 5의2의 정원 3명(서기관 · 과
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
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명)--- 2029년 3월 31일-----
----- 2029년 4월 1일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명,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 3명,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 1명-----

② -----
-----)(서기관 · 과
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
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2029년 3월 31일-----
2029년 4월 1일 -----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u>행정사무관</u>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 제56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장은 <u>2027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 -----(<u>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 -----. 행정안전부령 제56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9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03</u>	<u>1,708</u>	+5
·	·	·	
·	·	·	
일반직 계	<u>1,673</u>	<u>1,678</u>	+5
·	·	·	
·	·	·	
행정사무관	<u>115</u>	<u>116</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6</u>	<u>7</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8</u>	<u>211</u>	+3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03</u>	<u>1,708</u>	+5
·	·	·	
·	·	·	
일반직 계	<u>1,673</u>	<u>1,678</u>	+5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8</u>	<u>19</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6</u>	<u>54</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u>114</u>	<u>116</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4</u>	<u>55</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0</u>	<u>69</u>	-1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3</u>	<u>12</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6</u>	<u>7</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8</u>	<u>211</u>	+3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9</u>	<u>10</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91</u>	<u>90</u>	-1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1		
<u>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신 설></u>	<u>1</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 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10</u>	<u>9</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		
<u>공업서기</u>	<u><신 설></u>	<u>1</u>	+1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u>	<u>1</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u>	<u>1</u>	<u><삭 제></u>	-1
·	·	·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관리 담당)	3		
<u>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u>	<u><신 설></u>	<u>2</u>	+2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7</u>	<u>6</u>	-1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행정사무관	<u>5</u>	<u>6</u>	+1
행 정 사 무 관 · 농 업 사 무 관 또는 임업사무관	<u>2</u>	<u>1</u>	-1
·	·	·	
·	·	·	
행정주사보	<u>8</u>	<u>9</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3</u>	<u>14</u>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	<u>16</u> · ·	<u>13</u> · ·	-3
<u>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u>	<u>1</u>	<u><삭 제></u>	-1
<u>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u> ·	<u>1</u> ·	<u><삭 제></u> ·	-1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관 리 담당)	3		
<u>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u>	<u><신 설></u>	<u>2</u>	+2

[별표 8의4]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전산주사	1		
<u>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신 설></u>	<u>1</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 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3</u>	<u>2</u>	-1
·	·	·	
·	·	·	